



논제

본 원고는 한국제지공업연합회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골판지상자제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의 당위성

Corrugated Cardboard Box

1. 중소기업 고유 업종 현황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자의 사업활동 기회를 적정하게 확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기업 간 협력을 증대시켜 분업에 의한 상호이익을 증진하고 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코자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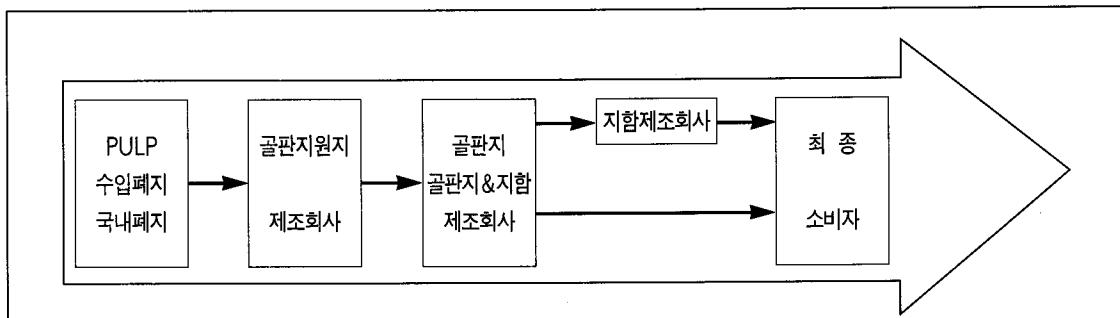
동법 제3조에서 중소기업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분야를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유업종지

정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으며 고유업종 및 해제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자 및 대기업자의 실질적 지배권계를 갖는다고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우의 당해 중소기업자는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여 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자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골판지제조업은 2001년 9월 1일부로 해제예정이나 포장용 판지상자 및 관련품 제조업 중 골판지상자제조업은 중소기업 고유업종(1979년 3월 10일 지정)으로 지정되어 있다.

[표 1] 골판지 상자 유통 경로 현황



2. 문제점

2-1. 고유업종 해제의 객관성 및 형평성 논란

처음 실시된 1979년에는 전체 고유업종 수가 23개에서 1989년에는 238개로 최대를 기록하였다가 1997년 1월 1일부로 47개 업종이 해제되어 2001년 현재 88개가 남아있으며 2000년 9월 6일 대통령령 제16964호에 의거 43개업종이 올해 9월 1일 부로 추가 해제 예정 되어 있다.

과거 해제업종 중에는 지기(판자)상자제조업이 포함되어 있고 골판지제조업 또한 올해 9월 1일부로 해제예정이나 골판지상자제조업은 해제가 되지 않아 고유업종 해제기준의 객관성과 형평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2-2. 중소기업의 난립 및 부실경영

현행 중소기업 고유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제조업은 그 동안 과보호로 인하여 지함업체 포함 약 2,500여 업체가 난립하여 시설의 낙후, 규모의 비경제성, 동종업체간의 과다 경쟁 등으로 인하여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한 다수의 업체가 경영 압박 및 부실 경영으로 이어져 부도 또는 휴 폐업에 따른 가동중지라는

최악의 사태에 처하고 있다.

2-3. 지정 존속사유의 변이

고유업종 지정 본래 취지는 해당업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여 다수의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자생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 법 제정, 시행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고유업종 지정의 장기화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일부 소수의 대형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업체들만이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현재는 후방 지원업종인 제지업(원지생산)에까지 진출하는 등 기업규모면에서 대기업화하고 있어 고유업종 지속은 경제논리에서도 부적당하다.

따라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장기간의 보호속에 경쟁력을 확보한, 극소수의 몇몇 대기업화 된 업체들만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변질되어 소규모의 영세기업들은 존립의 위기를 겪고 있다.

2-4. 유통구조의 복잡성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제조업의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에 따라 골판지원지 제조회사에서 실수요자인 골판지상자 소비자까지 3~4단계의 유

[표 2] 골판지 업체의 제지업 진출 현황

골판지회사	자산총액	설립일	제지회사	자산총액	설립일	자산합계
삼보판지	633.5	1974. 7.	대림제지	331.1	1984. 3.	964.6
태림포장	1,052.8	1976. 4.	동일제지	571.9	1986. 9.	1,624.7
오성제지	102.2	1956. 11.	오성판지	177.9	1979. 9.	280.1
서풍산업	103.6	1973. 8.	원덕제지	260.0	1984. 3.	363.6



통단계를 거쳐야 하는 바, 이에 따른 물류비용이 과다하여 불필요한 중간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뿐 아니라 포장원 가의 상승으로 국제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2-5. BUYER' MARKET

현재 시장 상황은 BUYERS' MARKET으로써, 원지 제조회사는 주·부원료의 구입 대금을 현금 및 단기여음(최장 90일)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원지 대금은 납품일로부터 150일 이상의 어음을 지급받거나 연리 45% 이상으로 할인된 현금으로 지급받아 어렵게 자금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제품 규격 변경, 특기 Spec. 요청(예: 평량 하향 조정 및 강도 상향 조정) 등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6. 역차별적 조항

골판지상자제조업이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골판지원지제조사는 사업영역이 원지에 제한되어 있으나 골판지상자제조사는 골판지원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어 역차별적 조항의 성격이 강하다.

(표 3) 우리나라 골판지 시장의 시장 규모

년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수량	1,920	2,050	2,221	2,432	2,612	2,745	2,942	3,177	3,263	3,358
금액	5,970	6,756	7,456	8,381	8,639	9,113	10,753	14,243	13,346	12,894

3. 개선방안 및 고유업종제제의 정당성

3-1. 일괄생산체제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

골판지원지 제조회사가 전방산업인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미국, 일본 등 선진 국가에서는 일반적이고 당연시하고 있다.

또한 일괄생산체제를 갖추게 되면 첫째, 골판지 원지 제조회사부터 소비자까지 3~4단계인 현행의 유통구조 체계를 개선, 골판지 원지로부터 골판지 상자까지의 공정을 일관성있게 유지하여 물류비용의 절감은 물론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MARGIN을 축소하여 최종 제품의 상자의 가격을 낮출 수 있어 우리나라의 여러 제품들이 국제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둘째, 일관된 공정에서의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 수준 향상 및 자발적인 포장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와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져 신규 수요 창출과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어 국내 포장 산업의 발전과 시장개방 추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셋째, WTO체제로 개방화는 필연적이었으나 IMF사태로 개방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규모와 자본, 기술로 무장한 외국 업체의 국내 시장 공략시 국내 골판지원지 및 골판지, 골판지상자 제조업체가 모두 살아 남을 수

(표 4) 미국 등 일본 골판지 상위 업체의 규모

업체명	골판지생산능력	총매출액	세계제지매출순위	비고
international	21	16,150	1	종합제지메이커, 일괄생산
Georgia Pacific	27	5,556	8	종합제지메이커, 일괄생산
Stone Container	41	4,689	15	종합제지메이커, 일괄생산
Weyerhaeuser	26	4,609	16	종합제지메이커, 일괄생산
Jefferson Smurfit	28	3,238	20	종합제지메이커, 일괄생산
Willamette	19	2,239	29	종합제지메이커, 일괄생산
Temple inland	27	2,063	32	종합제지메이커, 일괄생산
왕자제지((구)본주)	17	7,039	6	종합제지메이커, 일괄생산
일본제지((구)심조)	3	9,474	2	종합제지메이커, 일괄생산
대왕제지	5	2,553	27	종합제지메이커, 일괄생산
랭고	23	1,873	34	종합제지메이커, 일괄생산
셋쓰제지	6	505	94	종합제지메이커, 일괄생산
동악제지	3	405	108	종합제지메이커, 일괄생산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만 골판지원지로부터 골판지상자 제조업에 이르는 일련의 제조공정과는 관계없는 실수요자인 재벌급 대기업에서 참여하는 것은 영위 업종의 전문화 혹은 수직계열화와 전혀 상관없는 문어발식 기업 확장이라 할 수 있고 이는 내부 거래를 조장함으로써 공정거래를 해치게 되므로 영위 업종의 전문화 혹은 수직계열화와 상관없는 대기업의 중소기업과 유업종 참여는 배제되어야 한다.

3-2. 시장 규모의 부적정 및 투자 규모의 과다

골판지 업종은 1994년 이후 연간 시장규모가 1조원이 넘는 시장으로 시장규모로 볼 때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분류하기에는 곤란하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이라 볼 수 없다.

당초 고유업종 지정 당시의 중소기업 설비 규모는 비경제적인 지폭(최대 1,500mm), 생산 단위의 소규모, 낙후된 설비 등 영세성을 면치 못하였으나, 고유업종 지정에 따른 과보호 기간 중 일부 대형 업체(삼보판지, 태림포장, 제일산업 등)에서는 신규 설비를 도입하여 고속화 장폭화(최대 2,500mm), 자동화를 이룩한 바, 기존의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아직도 부실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경쟁력을 갖춘 신규 시설 설비(연산 1억m² 이상)에는 약 300억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되는 바, 본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제조업은 규모의 효율성 측면에서 조속히 고유 업종에서 해제되어야 한다. [ko]